

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준(안)

I. 목 적

- 과제 응모자가 작성하는 과학기술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계상되는 정책연구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
- 과제담당관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·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

II. 기본방침

- 본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정책연구비 산정에 적용함.
- “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, 2012.9.22.)”의 “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”의 원가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,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

III.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

-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서(별표1)
 - 비목은 인건비, 경비, 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음
- 환율은 미화 1\$당 1,130원('13년 예산편성시 적용 기준환율)으로 함

○ 인건비

- “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, 2012.9.22.)”의 기준 단가를 적용하되, 동 예규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상의 ①상여금 ②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

○ 경 비

- 경비는 여비, 유인물비, 전산처리비,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, 회의비, 임차료, 교통통신비, 감가상각비를 말함
-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, 시작품제작비, 연구관리비,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.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
-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인정
-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로 해소

○ 일반관리비

- 간접비 대신 일반관리비(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%이내)를 인정

○ 자문연구원 용역의 비용 산정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

V. 비목별 계상기준

가. 총 괄

비 목	계 상 기 준
○ 인건비	·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여 ·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, 근로기준법상의 상여금,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·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개인 인건비 총액이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개인별지급인건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
○ 경 비	
- 여 비	·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·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· 국내·외 여비중 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·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지급기준표 제1호 등급, 연구원 이하는 제2호 등급을 기준
- 유인물비	· 계약목적에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, 인쇄, 문헌복사비
- 전산처리비	·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· 자산가치가 있는 S/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
- 시약및 연구용 재료비	·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이하
- 회의비	·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, 토론회, 공청회,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· 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, 1인당 1회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·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 - 기본료 : 100,000원 - 초 과 : 50,000원 ※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
- 임차료	·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
- 교통통신비	·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, 전신전화사용료, 우편료
- 감가상각비	·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·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
○ 일반관리비	(인건비 + 경비)의 5%이내

나. 인건비

○ 지급기준(월급료)

(단위:원)

구 분	기준단가	비고
책임연구원	2,980,044	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 ※ 상기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「예정 가격 작성기준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(2012년 2.2%)를 반영한 단가이며,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
연구원	2,285,056	
연구보조원	1,527,485	
보조원	1,145,653	

○ 직급별 적용기준

구 분	책임연구원	연구원	연구보조원	보조원
기업, 단체 등	○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○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○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○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	○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○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○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○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	○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○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	○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
대학	○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	○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	○조교정도의 전문 지식	○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
출연 연구기관	○책임연구·기술원 ○선임연구원 5년이상	○선임연구·기술원 5년이하 ○연구원	○기능직	○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

※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,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

다. 국내여비

(단위 : 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
책 임 연구원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20,000	25,000	실비
연구원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20,000	실비 (상한액 : 40,000)
연구보조원 이하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20,000	실비 (상한액 : 40,000)

※ 1)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 제24298호, 2013.1.9) 반영

2)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라. 국외여비

(단위 : US\$)

구 분	등 급	일 비	숙박비	식 비
책 임연구원	가	35	실비(상한액:223)	107
	나	35	실비(상한액:160)	78
	다	35	실비(상한액:112)	58
	라	35	실비(상한액:79)	49
연구원	가	30	실비(상한액:176)	81
	나	30	실비(상한액:137)	59
	다	30	실비(상한액:91)	44
	라	30	실비(상한액:75)	37
연구보조원이하	가	26	실비(상한액:155)	67
	나	26	실비(상한액:123)	49
	다	26	실비(상한액:77)	37
	라	26	실비(상한액:71)	30

※ 1)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 제24298호, 2013.1.9) 반영

[별표1] 비목별 정책연구비 소요명세서

비 목 구 분	금 액	구 성 비	비 고
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			
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			
일반관리비(%)			
총 원 가			